

#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월 25일

미래·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년 1월 7일

나. 제안자: 윤유선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2년 1월 17일

라. 상정일자: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의결(2022.1.25.)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윤유선 의원)

#### 가. 제안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관내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3) 지원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4)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5)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6) 시행규칙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 나. 예산조치: 2022년도 본예산 기편성
- 다. 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라. 기 타: 입법예고(2022. 1. 7. ~ 1. 11.) 결과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허은옥)

#### 가. 제정취지

- 우리구 여성청소년에게 필요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sup>1)</sup>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물품(생리용품)의 지원 근거를 규정함
- **안 제2조(정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에 대해 정의함

---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로 개정(2021.04.20.)하여 2022.04.21.부터 시행예정

- 여성청소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여성
- 보건위생물품: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생리대 등의 제품
- 안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지원대상은 강서구 관내 여성청소년<sup>2)</sup>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으로 하고 지원방법은 금액이나 수량이 기록된 증표(전자바우처)로 하도록 함
- 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절차, 청소년 사생활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계획 수립 시 청소년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대면 방식을 우선하도록 함
- 안 제5조(중복지원 금지) · 안 제6조(환수조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중복지원 받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이 확인 된 경우 환수하도록 규정함

#### 다. 종합의견

- 2016년 취약계층 청소년이 생리용품 구입할 돈이 없어 비위생적인 물품을 사용하여 안타까움을 전해줬던 사건(이른바 ‘깎창 생리대’사건) 이후로 여성들이 불가피하게 겪는 생리현상에 필요한 생리용품의 가격과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의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되었음

---

2) 다만,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법 제5조제4항), 지원대상연령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하고 있어 현재 지원대상은 9세 ~ 24세 청소년 중 아래 기준의 대상 (19세~24세 청소년은 22년 5월부터 지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이에 정부에서는 2018년 7월부터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용품(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불필요한 낙인감을 심어주고 생리용품 가격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 청소년 생리용품의 보편지급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이루어져 왔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제적으로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재고를 위해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심과 노력이 이어져 왔으나 소요예산 등의 문제로 실제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많지 않은 상황임(경기 일부, 인천, 울산 등)
- 지속적인 논의와 요구 끝에 지난 2021년 3월 24일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개정하여 그 동안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을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음
  - ※ 기존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임의규정) →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강행규정)로 개정(시행 2022. 4. 21.) 다만, 지원 기준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선별지원 유지하되 지원 대상 연령을 만 9세에서 24세까지로 확대
- 우리구에서도 정부사업으로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대상을 만 24세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임
  - ※ 지원대상 인원 별첨참조
- 본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취지에 맞춰 우리구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위생용품의 보편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며,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보편

적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큰 만큼 정부정책 및 소요예산 등을  
감안하여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붙임 1) 참고자료 1부.

2) 관계법령 1부.

## 참고

## 참고자료

###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추진개요

#### 2022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21년	2022년
연령기준	만 11세~18세 (’03.1.1.~’10.12.31. 출생자)	만 9세~24세 (’98.1.1.~’13.12.31. 출생자)
초경비율	-	만 9세~10세 청소년 30% 적용
지원기간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만 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금액	1인당 11,500원/월 (연 최대 138,000원)	1인당 12,000원/월 (연 최대 144,000원)

###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연령기준 및 하나 이상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연령기준 : 만 9~24세(’98.1.1.~’13.12.31. 출생자)
    - ※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만 19세~24세(’98~’03년생) 청소년은 ’22년 5월부터 신청·지원 가능
    - ▶ “연(年)”을 기준으로 만 나이 선정(연나이=2022년-출생연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기간 : 만 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 지원금액 : 1인당 월 12,000원(연 최대 144,000원, 반기별 일괄지급)
  - ▶ 2021년도 신청자 : 지원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바우처 신청 없이도 바우처 자동 지급
  - ▶ 2022년도 신청자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바우처 지급
- 우리구 대상 : 2,567명 (만9세~24세 전체 여성 청소년 41,023명)
  - ※ 전체 여성 청소년의 6.25%

○ 연령별 지원대상

자치구	총인원	만9세~10세	만11세~18세	만19~24세
강서구	2,567	244	1127	1196

▶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 추출('21.11월 말, 만 9세~24세 자격기준 해당자)

○ 소요예산: 총 262,773천원

(단위 : 명 / 천원)

자치구	지원대상자 수 (편성배분기준)	총예산	국비(30%)	시비(35%)	구비(35%)
강서구	2,567	262,773	78,839	91,967	91,967

##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 8. (생략)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2.>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및 제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